

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------	-----	---------

신고인	상호:	
	대표자: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:
	사무소 소재지:	전화번호:
	사업소 소재지:	

변경 내용	구분	변경 전	변경 후
	상호의 변경		
	법인 대표자의 변경		
변경 사유	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